

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14.
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도하석 의원 등 10명(이진환, 고명욱, 임미연, 황국주, 김정희, 김장관, 강한곤, 이선주, 서보영)
- 발의일자: 2023. 9. 1.
- 회부일자: 2023. 9. 1.
- 상정 및 의결: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(2023. 9. 14.)

2. 제안이유

-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,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감소, 주변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지원대상 사업, 지원사업 신청,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 ~ 제6조)
- 보조금 신청·정산, 지원 결정의 변경·취소,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 ~ 제9조)
-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-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, 무려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, 주차거부, 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 ~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- 「주차장법」 제2조, 제3조, 제19조, 제21조의2
 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1조의2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9. 1. ~ 9. 11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,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여 불법주차 감소,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임.
- 본 조례안은 「주차장법」 제19조 및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며, 향후 본 조례안을 시행함으로써 주차장 공유에 따른 주차편의 제공 및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